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. 4. 19 선고 2022가단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5.

판 결 선 고 2022. 4. 1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7. 1. 1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. 2. 6. 접수 제10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경준

별지